

시민 성공시대' 다시 뛰는 춘천'

-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로 수요자 중심 예산편성 강화 -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

【 주요내용 】

○ 중점 추진사업

- ▶ 「주민e참여」로 제안 접수 활성화 및 제도홍보 강화
- ▶ 사업부서 및 위원회, 중간지원조직 대상 찾아가는 홍보 캠페인 전개
- ▶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참여대상 적극 확대
 - 차세대(청년+청소년) 주민참여예산학교
 - 읍·면·동 수요 맞춤형 주민참여예산학교
 - 주민참여예산위원 수준별 주민참여예산학교



기획행정국
자치행정과

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

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으로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함

I 추진근거 및 사업 구분

☐ 추진 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)
-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46조(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)
- 「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
- 「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(지원)

☐ 사업 구분

구분	공모사업	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	일반참여예산사업
해당사업	①시민제안 공모사업	②주민주도 마을사업	③일반참여예산사업
참여대상	일반시민	해당 읍면동 주민	해당사업 대상자
참여방법	사업제안서 제출	마을의제 제출, 주민총회	설문조사, 간담회, 설명회 등
심의의결	주민참여예산위원회	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* 읍면동 주민자치(위원)회가 대행	사업부서 등
관리·지원	자치행정과 시정협력팀	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	각 사업부서, 예산팀

※ 지역회의: 마을단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읍·면·동에 설치하는 조직

II 2024년 운영결과 및 평가

☐ 주민참여예산 반영금액: 82.8억원 [반영률 0.58%] / 94개 세부사업

구분	총계	시민제안 공모사업	주민주도 마을사업	일반참여예산사업
예산액(백만원)	8,285	112	1,078	7,095
사업수(개)	94	4	70	20

□ 운영성과

- 행정안전부,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결과 :
종합상 부문 「우수상」 수상
 - 2024년도 추진실적 대상으로 재정인센티브 0.2억 확보
- 전국 최초 연극 공연으로 제도 홍보 실시(2024. 4. 18.)
 - 위원 총 100명 대상 연극공연(20분 분량) 실시하여 정책 홍보 극대화
- 주민참여범위 확대로 민관협치 활성화
 -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대상을 청년(관내 3개 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), 자생단체 등으로 확대
-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제안 공모사업 제안 건수 확대
 - 2023년 12건에서 2024년 45건으로 375% 대폭 증가
- 온·오프라인을 활용한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다각화
 - 언론 보도(기사 및 기고문), 춘천MBC 방송프로그램(강원365), 시 유튜브 및 시청뉴스, 춘천행복알리미, 카카오톡·페이스북 등 온라인 홍보 활성화
 - 찾아가는 예산학교 총 12회 추진(2024. 4. 16. ~ 7.20.)
-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컨설팅 실시(2024. 8. 27.)
 -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
 -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 컨설팅 진단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내실있는 제도 운영에 활용

재정민주주의 실현

주민참여예산 참여 계층 확대 및 부서 간 협력 강화

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고도화	▶ 주민참여예산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- 시민제안 공모사업 - 주민주도 마을사업 - 일반참여예산사업
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전문화	▶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신설 - 위원회 주도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▶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- 위원의 계층별·연령별 대표성 강화
홍보 및 예산학교 운영 다각화	▶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다각화 - 차세대(청년+청소년) 주민참여 예산학교 - 읍·면·동 수요 맞춤형 찾아가는 예산학교 - 주민참여예산위원 수준별 주민참여 예산학교 ▶ 온·오프라인으로 홍보 강화

IV 세부 추진계획

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고도화

□ 시민제안 공모사업

- 공모기간: 1월~연중(단, 2025. 8월 이후 접수건은 다음연도 반영)

2025. 7. 31.까지 접수분: (2025년 검토) 2026년 당초예산 반영
 2025. 8. 1.~2026. 7. 31. 접수분: (2026년 검토) 2027년 당초예산 반영

- 참여대상: 춘천시민, 춘천시 소재 직장인·학생·단체 등
- 제안방법: 온라인(주민e참여, 이메일) 및 오프라인(우편, 방문)
- 최종선정: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·의결
- 선정절차

시민제안 의견수렴	시민제안 부서검토 및 현장실사	위원회 심의·의결	예산편성	예산 심의 확정, 공개
온·오프라인 상시 접수	⇒ 시민제안 부서검토	⇒ 1차심의: 분과회의 최종심의: 정기회	⇒ 최종 선정 제안 담 당 부서 전달 ⇒ 당초예산 반영요청	⇒ 시 홈페이지 주민e참여
연중	1~7월	1~7월	8~9월	다음 해 1월

※ 필요 시 분과 위원 및 담당 부서 공무원 등 현장 방문 실시

○ 제안분야

구분	기준
기본사항	• 목표예산(실링) 100억원 • 춘천시 전체의 발전 및 문제해결을 위해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 • 사업당 예산 20억원 이하(행사·축제성 사업일 경우 예산 1억원 이하) ※ 청년 및 안전 관련 제안 우선 검토

구분	기준
제외사업	• 인건비, 법적경비, 경상경비를 수반하는 사업 • 법령이나 조례, 그 밖의 예산편성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 •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기관·단체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•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이거나, 제안 신청 연도에 시행이 필요한 사업 • 특정인 또는 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하거나 특정제품 판매 목적 사업 • 시 자체계획에 의해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(공공청사 건립 사업 등) • 타 기관(경찰서, 소방서, 교육청, 철도공사, 한국전력공사 등) 소관 사업 • 단순 생활민원사업, 임대보증금 지원 목적 사업, 자산취득성 사업

○ 그 간 문제점 및 개선 계획

문제점	개선계획
① 시민제안 공모사업 연중접수에도 불구하고, 주민참여 저조	• 행정안전부 「주민e참여」로 제안 접수 활성화 및 제도홍보 강화 - 온·오프라인으로 대대적 홍보(이·통장회의, 봄 내소식지, 행복알리미, 시 홈페이지 배너, 전광판, 밴드 등) •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유공자 시상 • 읍·면·동 참여 활성화 - 읍·면·동 행정실적평가 항목 신설 - 읍·면·동 대상 맞춤형 찾아가는 예산학교 실시 - 읍·면·동 주민자치회 간사·사무원의 퍼실리테이터 활용
② 시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시민 및 사업부서의 인지도 부족 ※ 컨설팅 결과 반영	• 사업 부서 및 소관 위원회(문화예술, 사회복지 분야 등)·중간지원조직 대상 제도 홍보 - 시 위원회 및 중간지원조직 리스트업하여 회의 및 행사시 제도 홍보로 부문 간 네트워크 강화 ※ 기획예산과 협조 • 주민참여예산위원 소속 기관(단체)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참여 계층 다양화

□ 주민주도 마을사업

○ 제안분야: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회의 발굴 사업

예) 마을환경 개선, 축제, 문화, 복지, 이웃 소통 프로그램 등

※ 2025년 주민주도 마을사업 예산편성 내역: 10.7억원, 70개 세부사업

지원대상	사업 수	편성부서	예산액		
			합계	민간경상보조	시설비 등
21개소 (자치회 15, 위원회 6)	70개	자치행정과	10.7억원	9.6억원	1.1억원

○ 마을사업 선정과정

마을조사 및 의제발굴	원탁토론회	계획수립 및 부서검토	마을계획 마을투표	주민총회 및 예산편성
인적·물적자원, 주민욕구 조사	⇒ 마을의제 제안, 공유로 해결방안 도출	⇒ 원탁토론회로 도출된 마을의제를 토대로 계획 수립	⇒ 마을투표로 (온·오프라인) 마을계획 우선순위 결정	⇒ 마을계획 확정 및 당초예산 편성
2~4월	5~6월	7월	8월	8~9월

□ 일반참여예산사업

○ 대상사업: 주민간담회, 토론회, 상생협의 등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사업

○ 반영방법: 부서자체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예산반영

○ 추진과정

사업 관리	주민의견서 제출 요청	주민의견서 취합·작성	당초예산 반영결과 공개
일반참여예산 안내공문 시행 (기획예산과)	⇒ 반영내역 제출 안내공문 시행 (기획예산과)	⇒ 당초예산 첨부서류 작성 (자치행정과)	⇒ 시 홈페이지 (자치행정과)
7월	10월	11월	다음 해 1월

□ 202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의견 설문조사

○ 설문내용

- 2026년도 재정운영 및 우선투자방향, 주민참여예산제 운영·개선 방안, 기타 건의사항 등

○ 활용방법: 홈페이지 공개 및 전 부서 통보, 예산편성 기초 자료로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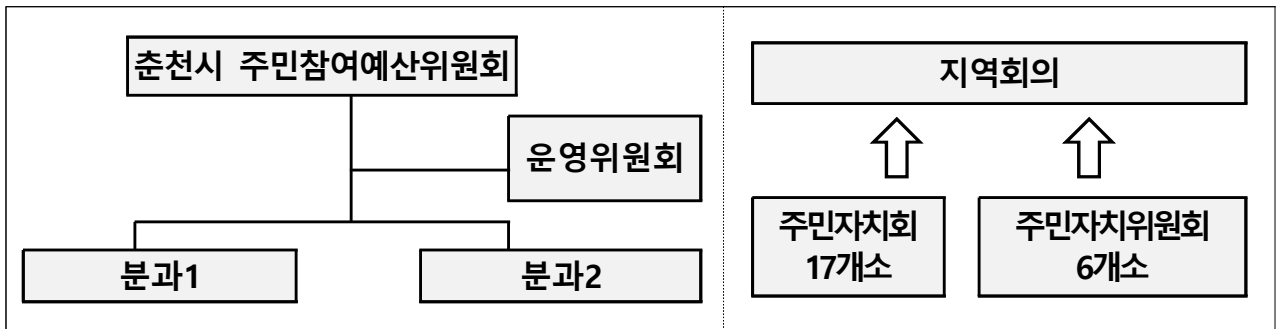
○ 조사방법: 온·오프라인 병행 실시

○ 추진과정

조사방향 및 문항설계 논의	계획 수립	설문조사 실시	결과분석	결과공개 및 반영 요청
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참여	⇒ 설문조사 세부계획 수립	⇒ 온·오프라인 실시	⇒ 설문조사 결과분석	⇒ 사업부서 반영요청 및 결과공개
1월	1~2월	3~7월	8월	9월

※ 주민참여예산위원회(6기): 조사방향 및 설문문항 의견 제시(네이버 밴드), 시민참여 홍보

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전문화



※ 운영위원회(신설): 위원장, 부위원장, 분과위원장 등 구성,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전반 협의

□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일정

○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제7기 위원회 모집 및 위촉	분과위원회 회의	정기회	평가회
- 예산학교 교육 - 정기회 (분과배정, 임원선출)	시민제안 공모사업 심의	시민제안 공모사업 최종 선정	제도개선 의견청취 및 집행 평가 (주민참여예산+지역회의)
3~5월	6~7월	8~9월	9월

※ 운영위원회 회의는 월 1회 및 필요시 수시 개최

□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

○ 제7기 위원회 구성

- ▶ 임 기: 2025. 5. 15. ~ 2027. 5. 14.(2년, 1회 연임가능)
- ▶ 인 원: 제7기 정원 30명
- ▶ 분 과: 3개 분과 운영(운영·문화복지·경제교통)
- ▶ 신청자격

-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19세 이상의 주민
- 춘천시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·사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

※ 전문성 있는 기관(단체) 및 중간지원조직 소속 위원 위촉 노력

- ▶ 신청방법: 방문, 우편, 이메일로 신청서 등 양식 제출
- ▶ 선정방법

구분	대상 및 모집인원	모집 기간	위촉
1차 모집	제6기 위원 중 연임을 희망하는 사람	3월 중	2025. 5. 15. (예정)
2차 모집	1차 모집 후 총원이 필요한 인원	4월 중	

※ 주민참여예산 기본교육 이수 증빙서류 제출

- ▶ 공개모집 선정기준(안): 계층별·연령별 대표성 강화

우선순위	대상 및 모집인원
1순위	• 특정 성별이 60%를 넘지 않도록 성비 고려
2순위	• 청년 참여 및 사회적 약자(아동, 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족, 저소득층 등) 참여 적극 권장
3순위	•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 분포도 고려
4순위	•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읍·면·동별 인구수 감안 선정

○ 운영위원회 신규 설치

- ▶ 위원장, 부위원장, 각 분과위원장 등 구성
- ▶ 주민참여예산제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협의·조정, 홍보 방안 협의
- ▶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요 추진 일정 등에 관한 사항 결정

※ 분과위원회 수, 명칭, 담당분야, 소속 위원은 1차 정기회에서 토의

○ 위원회 기능 및 역할

- ▶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제안 공모사업 심의·선정
- ▶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모색
- ▶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
- ▶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회, 공청회 등 의견수렴 활동

3 홍보 및 예산학교 운영 다각화

☐ 운영근거

○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6조(예산학교)

-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,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.

☐ 세부 운영 계획 ※ 행정안전부 컨설팅(2024.8월) 결과 반영

대상	운영계획
① 차세대(청년+청소년) 주민참여예산학교	- 대상: 차세대(청소년 및 청년) 시민 대상 - 기간: 2025. 3.~10. - 장소: 시청 다목적회의실, 청소년수련관 등 - 내용: 미래 세대의 시민 역량을 함양하여 新성장동력으로 활용 - 춘천시 청년발전위원회,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유관단체 및 중간지원조직 대상 예산학교 실시·시민제안 공모사업 접수 - 관내 대학(행정학과 등)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예산학교 실시 ※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협조
② 읍·면·동 수요 맞춤형 찾아가는 예산학교	- 대상: 25개 읍·면·동 주민, 주민자치회 및 유관단체 - 기간: 2025. 3.~10. - 내용: 읍·면·동 대상 제도 홍보 및 시민제안 공모사업 참여 유도 - 사전 수요 파악 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, 교육 실시 후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접수 - 읍·면·동 배치된 간사·사무원을 퍼실리테이터로 활용
③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준별 주민참여 예산 학교	- 대상: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- 기간: 2025. 5.~10. - 장소: 시청 다목적회의실 등 - 내용: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 수준별 교육 운영 - 1단계: 주민참여예산제 개요(위촉식) - 2단계: 제안서 및 주민의견서 작성 방법(워크숍) - 3단계: (심화) 시민제안 공모사업 심사 및 모니터링 방법

□ 온·오프라인으로 홍보 강화: 연중

○ 홍보자료 제작·배부:

- 주민참여예산제, 시민제안 공모사업 안내, 참여방법 소개 등

○ 동 주민총회 시 현장 대민 홍보 추진

- 주민이 밀집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온라인 매체 사용이 어려운 고령 세대 참여 유도

구분	내용
온라인	시 유튜브·홈페이지·네이버 블로그·페이스북, 보도자료, 시정뉴스
오프라인	포스터, 리플릿, 이통장 회의자료, 시정소식지 「봄내」, 공공 전광판
기 타	춘천행복알리미, 버스정보시스템(BIS)

V

소요예산

세부사업명	편성목	편성내용	예산액
합계			17,500천원
시민주도 주민참여예산 운영	사무관리비 (201-01)	• 일반수용비 - 위원회 운영(회의참석수당 등) - 회의자료 제작·인쇄 등	13,500천원
	행사운영비 (201-03)	• 위원회 교육 및 워크숍 • 찾아가는 예산학교 추진	4,000천원

☐ 사업부서 및 관련 기관 협조사항

관련 부서	협조사항
전 부서	• 주민참여예산 홍보 적극 협조 • 시민제안 공모사업 검토 철저 - 추진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(법령 등) 및 사유 명시 - 제안자와 적극적 의사소통 및 필요시 현장 방문 실시 - 사업비를 미기재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적정 사업비를 산출하여 의견 제시
소통담당관	• 주민참여예산 홍보 적극 협조 - 홈페이지 팝업창, SNS(페이스북·블로그 등) 게재 - 행복알리미 전송, 봄내소식지 게재, 보도자료 배포 등
기획예산과	• 일반참여예산사업 취합 협조 • 부서 소속 위원회·중간지원조직 리스트업 협조
총무과	• 주민참여예산 교육 상시학습 인정
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	•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실시 지원 •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 지원 • 제안사업 발굴 회의, 현장조사, 모니터링 등 지원

붙임 관련 법률 및 시행령 1부. 끝.

☐ **지방재정법**

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(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(이하 이 조에서 "주민참여예산제도"라 한다)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5. 13., 2018. 3. 27.>

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(이하 "주민참여예산기구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18. 3. 27.>

1.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2.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, 2018. 3. 27.>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·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5. 13., 2017. 7. 26., 2018. 3. 27.>

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18. 3. 27.>

☐ 지방재정법 시행령

제46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)

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(이하 이 조에서 "예산과정"이라 한다)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0. 3. 3.>

1. 공청회 또는 간담회

2. 설문조사

3. 사업공모

4.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3.>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(이하 이 조에서 "주민참여예산제도"라 한다)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3. 3.>

1.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
2. 예산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
3.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
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0. 3. 3.>